

의안번호	2202739
의 퇴 인	엄태영의원
회 답 일	2024.10.8.
추계번호	24D272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54호 신설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제51호 신설	-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은 소속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제54호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제51호 신설	

2. 상세 사유

□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공무원의 종류 및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추가(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 직무교육 실시, 수사·증거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에게 수사활동비가 지급되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소속 관서장의 제청 및 검사장의 지명 비율,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법경찰관리에게 지급될 수사활동비 등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 참고로,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활동비를¹⁾ 매월 25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사·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에게 매월 20만원 지급²⁾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assembly.go.kr

1) 「근로감독관규정」 제6조(활동비 지급)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2)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